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6-14호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6호(2010.8.2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7호(2021.12.1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30호(2023.04.2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4호(2024.6.20.)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6호(2025.01.22.)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13호(2025.02.19.)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수표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I.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최초결정일)
기정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입정동 237 일대	12,443.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4호 (2010.8.26.)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2,443.7	100.0	-
획지(대지)		10,445.8	83.9	-
소 계		1,997.9	16.1	-
정비기반시설	도 로	346.9	2.8	-
공공임대상가부지		1,651.0	13.3	-

※ 추가 기반시설 부담(환산부지면적 1,201.5㎡)은 건축물 공사비로 기부채납하며, 토지이용 면적산정에서 제외

※ 서울시 주관부서(도시재창조과) 및 관련부서(산업입지과 등) 협의를 통하여 넓은 범위의 도매·소매업 종사자의 입주를 위하여 공공임대산업시설 → 공공임대상가 명칭 변경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2,443.7	100.0	-
일반상업지역	12,443.7	100.0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해당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2~25	집산 도로	1,870 (-)	중로구 와룡동 5-14	중구 필동1가 40	일반 도로	-	서울시공고 제2001-646호 (2001.8.6)	충무로
기정	중로	3	1	12~27	집산 도로	5,390 (-)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3-130호 (2003.5.28.)	청계천로
기정	소로	2	1	9	집산 도로	42	을지로3가 104-2	을지로3가 104-13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5-255호 (2005.8.25.)	충무로9길
기정	중로	3	3	9.5~13	집산 도로	177 (87)	을지로3가 5-4	입정동 26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0-306호 (2010.8.26.)	을지로11길
기정	소로	3	1	7~7.5	집산 도로	126	을지로3가 104-13	을지로3가 96-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0-306호 (2010.8.26.)	충무로11길 을지로13길

※ ()는 수표구역 내의 연장임

2) 철도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384.56	서울시고시 제46호 (1982.2.9.)	수표구역 내 면적 편입
변경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435.23	서울시고시 제46호 (1982.2.9.)	

■ 철도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 철도 면적 변경 - 변경전 면적 : 384.56㎡ - 변경후 면적 : 435.23㎡	본 건물의 조경구획 변경으로 인한 지하철 환기구 위치 변경에 대하여 관련부서(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입체적 결정규모(면적, 높이)를 변경

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고
				구분	규모	
기정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면적(㎡)	384.56	- 입체적 결정범위(출입구 일부) - 지상1층 : A=113.47㎡ H=31.17m~24.20m(해수면기준) - 지하1층 : A=316.65㎡ H=24.20m~18.50m(해수면기준) - 지하2층 : A=368.64㎡ H=18.50m~11.35m(해수면기준)
				높이(m)	11.35~31.17	
				층	지하2층~ 지상1층	
				길이(m)	31.59~54.89	
				폭(m)	8.0~10.29	
변경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면적(㎡)	435.23	- 입체적 결정범위(출입구 일부) - 지상1층 : A=158.71㎡ H=31.17m~24.20m(해수면기준) - 지하1층 : A=351.12㎡ H=24.20m~18.50m(해수면기준) - 지하2층 : A=393.49㎡ H=18.50m~11.35m(해수면기준)
				높이(m)	11.35~31.17	
				층	지하2층~ 지상1층	
				길이(m)	29.26~52.69	
				폭(m)	8.0~11.12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 입체적 결정 면적 변경 - 변경전 면적 : 384.56㎡ - 변경후 면적 : 435.23㎡ - 입체적 결정 높이 변경 - 변경전 높이 : 31.59~54.89m - 변경후 높이 : 29.26~52.69m - 입체적 결정 폭 변경 - 변경전 높이 : 8.0~10.29m - 변경후 높이 : 8.0~11.12m	본 건물의 조경구획 변경으로 인한 지하철 환기구 위치 변경에 대하여 관련부서(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입체적 결정규모(면적, 높이)를 변경

라.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부담)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변경없음)

구분	구역면적 (㎡)	대지면적 (㎡)	기존 정비기반 시설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순부담률 (%)
				계	도로	공공임대 상가부지	공공임대 상가건축물	
기정	12,443.7	10,445.8	483.9	3,199.4	346.9	1,651.0	1,201.5	20.63

※ 순부담률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기존 정비기반시설면적) / (시행면적 - 기존 정비기반시설면적)
 = (3,199.4㎡ - 483.9㎡) / (13,645.2㎡ - 483.9㎡) = 20.63%

※ 서울시 주관부서(도시재창조과) 및 관련부서(산업입지와 등) 협의를 통하여 넓은 범위의 도매·소매업 종사자의 입주를 위하여 공공임대산업시설 → 공공임대상가 명칭 변경

※ '공공임대상가 건축물'은 공사비 원가검증 결과를 반영한 토지 환산면적

2)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확보) 계획 (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 순부담 : 2,715.5㎡ / 20.63%

① 토지 기부채납(도로, 공공임대상가부지) : 1,997.9㎡

- 도시계획시설(도로) : 346.9㎡
- 공공임대상가부지 : 1,651.0㎡

② 건축물 기부채납(환산부지면적) : 1,201.5㎡

- 건축물 환산부지 : 1,201.5㎡

③ 정비기반시설(국·공유지) 무상양도 : 483.9㎡

- 국토교통부 소관 : 57.3㎡
- 서울특별시 소관 : 379.0㎡
- 중구 소관 : 47.6㎡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3,199.4	100.0	-
토지	소계	1,997.9	62.4	-
	도로	346.9	10.8	-
	공공임대상가부지	1,651.0	51.6	-
공공임대상가(건축물)		1,201.5	37.6	환산부지면적

※ 서울시 주관부서(도시재창조과) 및 관련부서(산업입지와 등) 협의를 통하여 넓은 범위의 도매·소매업 종사자의 입주를 위하여 공공임대산업시설 → 공공임대상가 명칭 변경

(3) 정비기반시설 편입 토지 (변경없음)

구분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비고
				계	도로	공공임대 상가부지	
계			16,335.8	1,997.9	346.9	1,651.0	-
1	을지로3가	96-1	54.9	8.2	8.2	-	-
2		96-2	92.6	26.4	26.4	-	-
3		96-3	46.3	17.5	17.5	-	-
4		104-1	485.7	485.7	-	485.7	-
5		104-2	195.7	195.7	23.0	172.7	-
6		104-3	195.4	195.4	17.3	178.1	-
7		104-5	167.9	167.9	24.9	143.0	-
8		104-10	143.5	143.5	18.8	124.7	-
9		104-11	82.0	82.0	13.8	68.2	-
10		104-13	33.1	33.1	20.9	12.2	-
11		104-15	18.5	18.5	-	18.5	-
12		108	209.2	9.1	6.0	3.1	-
13		109	52.9	9.6	-	9.6	-
14		110-1	234.4	204.3	22.4	181.9	-
15		174-3	1.0	1.0	-	1.0	-
16		175	219.0	190.4	-	190.4	-
17		176-1	96.8	0.9	-	0.9	-
18		176-5	37.0	20.2	-	20.2	-
19		335-1	12,183.1	8.9	8.9	-	-
20	입정동	108-2	36.4	13.4	-	13.4	-
21		175-6	99.2	27.4	-	27.4	-
22		246	117.2	15.8	15.8	-	-
23		246-1	413.2	5.3	5.3	-	-
24		246-3	1.8	0.3	0.3	-	-
25		262	167.9	26.1	26.1	-	-
26		262-1	22.5	2.6	2.6	-	-
27		263-1	198.3	23.4	23.4	-	-
28		263-4	95.9	11.2	11.2	-	-
29		263-5	49.6	4.4	4.4	-	-
30		267	194.9	8.5	8.5	-	-
31		272-8	251.2	24.8	24.8	-	-
32		272-10	122.3	15.6	15.6	-	-
33		246-10	16.4	0.8	0.8	-	신규등록

(4) 정비기반시설(국·공유지) 무상양도 (변경없음)

구분	위치	시설의 종류	기존 정비기반시설면적(㎡)			비고
			계	대지내 용도폐지	계획기반시설 내	
합계			483.9	445.0	38.9	-
1	을지로3가 335-1	도로	57.3	48.4	8.9	국토교통부
2	입정동 29-3	현황도로	12.6	12.6	-	서울특별시
3	입정동 175-6	현황도로	99.2	71.8	27.4	서울특별시
4	입정동 231-3	현황도로	2.6	2.6	-	서울특별시
5	입정동 254-2	현황도로	264.6	264.6	-	서울특별시
6	을지로3가 209-9	현황도로	9.9	9.9	-	중구
7	입정동 29-20	현황도로	7.9	7.9	-	중구
8	입정동 230-3	현황도로	1.7	1.7	-	중구
9	입정동 260-1	현황도로	5.6	5.6	-	중구
10	입정동 262-1	현황도로	22.5	19.9	2.6	중구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443.7	획지	10,445.8	중구 입정동 237 일대	업무	50이하	기준 : 600이하 기준 : 800이하 상한 : 1,145.7이하	147.7 이하
			공공임대 상가부지	1,651.0	중구 입정동 262 일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름			

구 분	내 용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 용적률계획 : ① + ② + ③ = 1,145.7%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800% (200% 적용)				
	구분	인센티브 완화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문화인프라	• 전시장,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정률부여(보상계수 0.3) (최대 50%)	30%
	친환경 개발	•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정량부여 (최대 30%)	30%
		• 전기차충전소 설치		정량부여 (최대 20%)	20%
	녹지 생태공간	•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정률부여(보상계수 2) (최대 100%)	70%
	보행가로 활성화	• 무장애도시 조성		정량부여 (최대 30%)	30%
	안전·방재	• 방재 관련시설		정량부여 (최대 20%)	20%
	소 계			-	200%
	③ 상한용적률 : 1,145.7% 이하 (345.7% 적용)				
구분	적용내용			완화량	
공 공 시 설	도로	허용용적률×(1+1.3×α)	800%×(1+1.3×0.1449) [α=(1,997.9- 483.9)÷10,445.8]	150.7%	
	공공임대 상가부지	허용용적률×(1+1.2×α)	800%×(1+1.2×0.1150) [α=1,201.5÷10,445.8]	110.4%	
공개공지 초과조성		허용용적률×(의무면적 초과하는 공개공지÷대지면적)	800%×[(2,148.90- 1,044.58) ÷ 10,445.8]	84.6%	
소 계			-	345.7%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최고높이계획 : ① + ② + ③ : 147.7m 이하 적용 ① 기준높이 : 70m ② 개방형녹지 :74.0m = [적정건폐율(50%)×(기준높이(70m)+20m)]÷(80%-개방형녹지율(48.75%)) ③ 공개공지 초과 : 3.7m = 기준높이(70m)×(의무면적 초과하는 공개공지(1,104.32㎡)÷2)÷대지면적(10,445.8㎡)				
	• 지정용도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근린생활시설, 전시시설 등)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입정동 237 일대	12,443.7	-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2,443.7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443.7	100.0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	22~2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870 (-)	종로구 와룡동 5-14	중구 필동1가 40	-	서울시공고 제2001-646호 (2001.8.6)	충무로
기정	중로	3	1	12~27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390 (-)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	서울시고시 제2003-130호 (2003.5.28)	청계천로
기정	소로	2	1	9	집산 도로	일반 도로	42	을지로3가 104-2	을지로3가 104-13	-	서울시고시 제2005-255호 (2005.8.25)	충무로9길
기정	중로	3	3	9.5~13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77 (87)	을지로3가 5-4	입정동 262	-	서울시고시 제2010-306호 (2010.8.26)	을지로11길
기정	소로	3	1	7~7.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6	을지로3가 104-13	을지로3가 96-2	-	서울시고시 제2010-306호 (2010.8.26)	충무로11길 을지로13길

※ ()는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나. 철도 결정 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384.56	서울시고시 제46호 (1982.2.9.)	수표구역 내 면적 편입
변경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435.23	서울시고시 제46호 (1982.2.9.)	

■ 철도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 철도 면적 변경 - 변경전 면적 : 384.56㎡ - 변경후 면적 : 435.23㎡	본 건물의 조경구획 변경으로 인한 지하철 환기구 위치 변경에 대하여 관련부서(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입체적 결정규모(면적, 높이)를 변경

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고
				구분	규모	
기정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면적(㎡)	384.56	- 입체적 결정범위(출입구 일부) - 지상1층 : A=113.47㎡ H=31.17m~24.20m(해수면기준) - 지하1층 : A=316.65㎡ H=24.20m~18.50m(해수면기준) - 지하2층 : A=368.64㎡ H=18.50m~11.35m(해수면기준)
				높이(m)	11.35~31.17	
				층	지하2층~ 지상1층	
				길이(m)	31.59~54.89	
				폭(m)	8.0~10.29	
변경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면적(㎡)	435.23	- 입체적 결정범위(출입구 일부) - 지상1층 : A=158.71㎡ H=31.17m~24.20m(해수면기준) - 지하1층 : A=351.12㎡ H=24.20m~18.50m(해수면기준) - 지하2층 : A=393.49㎡ H=18.50m~11.35m(해수면기준)
				높이(m)	11.35~31.17	
				층	지하2층~ 지상1층	
				길이(m)	29.26~52.69	
				폭(m)	8.0~11.12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 입체적 결정 면적 변경 - 변경전 면적 : 384.56㎡ - 변경후 면적 : 435.23㎡ - 입체적 결정 높이 변경 - 변경전 높이 : 31.59~54.89m - 변경후 높이 : 29.26~52.69m - 입체적 결정 폭 변경 - 변경전 높이 : 8.0~10.29m - 변경후 높이 : 8.0~11.12m	본 건물의 조경구획 변경으로 인한 지하철 환기구 위치 변경에 대하여 관련부서(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입체적 결정규모(면적, 높이)를 변경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나. 건축물 건폐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수표구역	50% 이하	-

다.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수표구역	600% / 800% / 1,145.7% 이하	-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계획내용	완화량	비 고
기정	문화인프라	• 전시장,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30%	200%
	친환경개발	•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30%	
		• 전기차충전소 설치	20%	
	녹지생태공간	•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70%	
	보행가로활성화	• 무장애도시 조성	30%	
	안전·방재	• 방재 관련시설	20%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계획내용	완화량	비 고
기정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 토지(도로, 공공임대상가부지) : 1,997.9㎡	150.7%	345.7%
		• 건축물(공공임대상가) : 1,201.5㎡	110.4%	
	공개공지 초과조성	• 법정 공개공지 : 1,044.58㎡ • 초과 공개공지 면적 : 1,104.32㎡	84.6%	

라.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수표구역	147.7m 이하	- 개방형녹지에 따른 높이 : 144.0m - 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높이 : 3.7m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건축한계선	획 지	• 북측 중로3-1호선(청계천로) : 10m • 동측 중로1-1호선(충무로) : 3m • 서측 중로3-3호선(을지로11길) : 3m • 남측 소로3-1호선(충무로11길) : 3m	-
		공공임대 상가부지	• 북측 인접대지(획지)경계선 : 1m • 동측 중로1-1호선(충무로) : 3m • 서측 소로3-1호선(을지로13길) : 3m • 남측 소로2-1호선(충무로91길) : 3m	-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획 지	• 북측 중로3-1호선(청계천로) : 10m • 동측 중로1-1호선(충무로) : 3m • 서측 중로3-3호선(을지로11길) : 3m • 남측 소로3-1호선(충무로11길) : 3m	서측,남측 보도부분 지상권 설정 (증구청장)
		공공임대 상가부지	• 북측 인접대지(획지)경계선 : 1m • 동측 중로1-1호선(충무로) : 3m • 서측 소로3-1호선(을지로13길) : 3m • 남측 소로2-1호선(충무로91길) : 3m	-
	공개공지	이면가로변	• 충무로11길·을지로11길 결절부 공개공지 1개소	-
		간선가로변	• 청계천로·충무로 결절부 공개공지 1개소	-

2)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적용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개방형 녹지	청계천로변, 충무로변, 을지로11길변	5,092.5	- 조성계획 : 구역 서측, 동측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 조성 -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	-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 준수할 것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녹지(공개공지) 형상 등은 조정 가능

3)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주차계획	업무시설 주차장 내 공공임대상가를 위한 주차장 일부 확보 ※ 운영부서 협의 및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	-

Ⅲ. 변경사유

- 서울시고시 제2010-306호(2010.08.2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21-697호(2021.12.16.), 서울시고시 제2024-304호(2024.06.20.)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6호(2025.01.22.),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13호(2025.02.19.)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우리 구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① 본 건물의 조경구획 변경으로 인한 지하철 환기구 위치 변경에 대하여 관련부서(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에 따른 입체적 결정규모(면적, 높이) 변경, ② 넓은 범위의 도매·소매업 종사자의 입주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명칭 변경 등의 반영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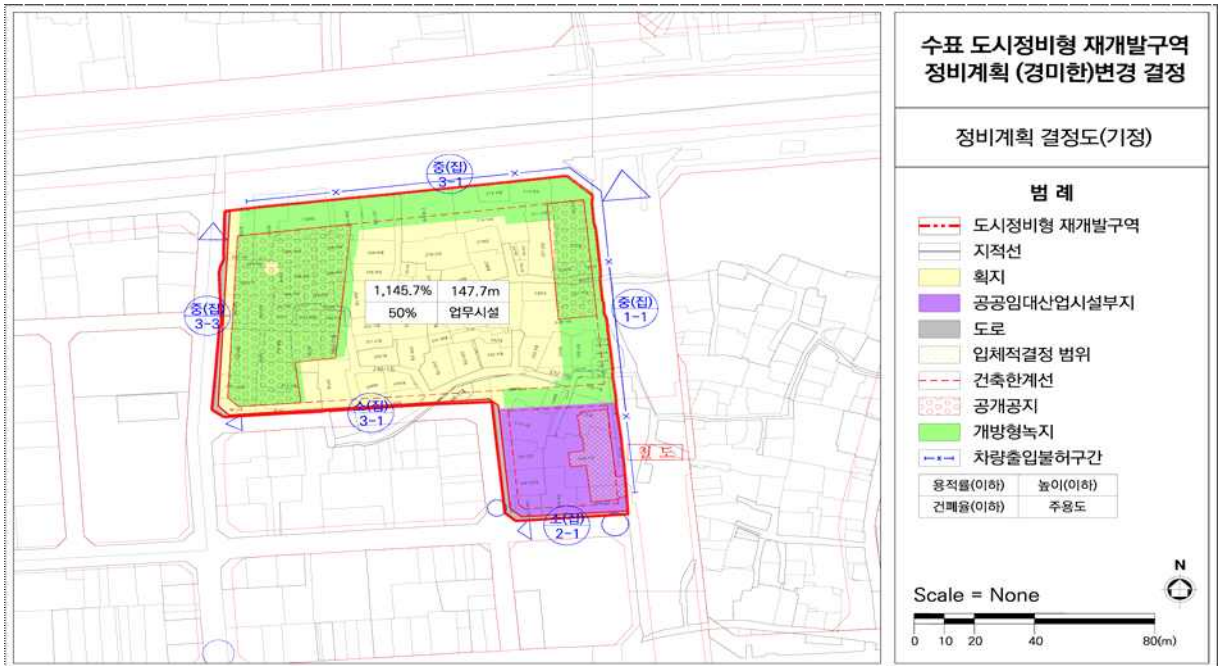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중구청 도심정비과(☎3396-577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공개공지의 범위는 상기 도서에 준하여 설치하고, 공개공지의 면적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의 기준에 따라 제척하여 산정할 것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공개공지의 범위는 상기 도서에 준하여 설치하고, 공개공지의 면적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의 기준에 따라 제척하여 산정할 것